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21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백혜련 · 김준혁 · 전진숙
강준현 · 홍기원 · 이강일
남인순 · 백승아 · 염태영
이수진 · 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 및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부족하고, 견제받지 않는 폐쇄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

11조의2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을 “2”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부감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집행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와 감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감시위원회를 둔다.

② 외부감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인사로 위촉하며,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외부감시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선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지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외부감시위원회는 매년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5條(委員長) ① (생략)</p> <p>②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⑤ (생략)</p> <p>第6條(常任委員) ① <u>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u></p> <p>② · ③ (생략)</p> <p><신설></p>	<p>第5條(委員長)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第6條(常任委員) ① <u>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에</u>----- ----- -----<u>2</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외부감시위원회의 설치 등) ① <u>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집행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와 감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감시위원회를 둔다.</u></p> <p>② <u>외부감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외</u></p>

부 인사로 위촉하며,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외부감시위원회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사무 및 선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지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외부감시위원회는 매년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